

#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장 호 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
- 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언론학 석·박사  
(언론/미디어 법제 전공)
-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연구부장,  
아산 YMCA 이사
- 논문 및 저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중재제도의 변화」,  
「최근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외 다수

## 1. 서 론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초상권을 인격권의 일부로 명문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언론중재제도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sup>1)</sup> 2005년 이전까지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받은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다. 법원은 초상권을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으로 규정했다.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은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의 속성을 갖고, 재산권으로서는 자신의 초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언론보도를 통해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는 주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고, 재산권으로서 초상권 침해는 타인의 초상을 광고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한다(이승선, 2006).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초상권 보호를 축소할 수 있다고 판결해왔다. 예를 들면 국가는 범죄수사와 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실사 그러한 촬영이 적법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sup>2)</sup>

그러나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초상권

1) 제5조 1항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분쟁은  
언론 자유와 개인 인격권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법적 기준 통해 해결해야

침해는 보다 엄격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대한 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다.<sup>3)</sup> 비록 사진 촬영이 아파트 주차장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중간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의 내용 역시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고, 사진 촬영과정에서 미행·감시 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보험사에게 초상권 침해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침해법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衡量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개인의 초상권 침해 여지가 높은 분야 중 하나가 언론이다. 개인의 초상은 언론보도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력 감시와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이 언론의 주된 기능인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보도하는 개인의 초상은 당사자에게는 수치스러워 공표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영상과 화면

에 익숙한 독자와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면 언론은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해야하고, 종종 초상권 침해 분쟁을 일으키곤 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분쟁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법적 기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사례를 연구한 학자들이 제시한 위법성 조각의 주요 기준도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취재보도방법의 적절성으로, 언론중재법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위수는 “사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 공표가 위 사실과 일체가 되어 오로지 공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진의 내용, 촬영수단방법이 위 보도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한위수, 1994). 김옥조 역시 “공공의 이해와 관계있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이고, 그 사진의 내용이나 촬영의 수단·방법이 위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한지”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판결. 1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은밀한 촬영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증거수집행위의 일환이고, 촬영장소가 “일반인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영역”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 13979판결.

주장했다(김옥조, 2005). 김경호도 “초상을 침해한 보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보도의 내용이 진실성에 기초한 것인지, 정상적인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기준을 토대로 이익 형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경호, 2004).

초상권 침해 피해자의 지위나 초상의 촬영 장소에 따라 보호범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박용상은 공인과 사인의 초상권을 구분하면서, “공적인물이라고 하여 바로 그 초상의 공개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가 시사적 사안에 관계되어 정당한 공적 관심을 환기하는 경우에만 그의 초상 공개는 가능하다”고 보았다(박용상, 2008). 한편 임건면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은 제한되지만, 그 초상이 초상 본인에 대한 부당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공개되는 것까지 수인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임건면, 2001). 고명식은 사람이 공공장소에 나타난다고 하여 전부 초상의 촬영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 군중 앞에 나서서 주목을 끄는 행위를 하는 것은 초상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초상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명식, 2003).

## 2.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판례분석

지금까지 초상권 침해 소송의 대부분은 언론사가 당사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초상을 사용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로 언론사의 무책임한 취재보도관행으로 발생한 경우였다.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

피해자가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상권 침해 대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초상권 관련 법적 분쟁이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과 다른 점은 보도내용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판결의 주된 요인이 되지 않고,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다.

법원은 보도내용의 공익성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보도된 사안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가를 판별하기도 했고, 원고가 공인인지 일반인인지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원고의 공인 여부를 동시에 거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상의 당사자가 사진촬영이나 사진의 게재 여부를 승낙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었다.

### 1) 공익성 기준 : 공인과 사인의 구분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지나치게 사생활 보호를 강조할 경우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왔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면 사적 사안의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은 거듭 강조해왔다. 반면 언론보도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면 개인의 사적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도내용 자체의 공익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고 공인에게는 사생활 보호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언론자유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서울지방법원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에 대해 친북용공의혹을 제기한 주간지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포금지

법원의 경우, 보도내용 자체의 공익성을 판단하기보다  
공인과 사인을 구분해 공인에게는 사생활 보호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언론자유 영역을 확대하는 경향 보여

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sup>4)</sup> 법원은 입증되지 않은 친북의혹을 제기하고, 김대중 후보의 사진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고, 관련기사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진실입증이 되지 않았고, 공익을 위한 보도가 아니라 비방 목적의 보도라면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인 원고의 지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97년 TV 뉴스 앵커를 지낸 한 방송사의 간부가 기자신분을 밝히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다 몰래 촬영당해 타방송사에 보도되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sup>5)</sup> 법원은 “원고의 행동을 촬영하여 방송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했다. 음주운전의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년 후에도 음주운전 단속 관련 보도로 인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이번에는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sup>6)</sup> 원고를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한 방송사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원고의 모습을 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하여 방영하자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방영,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없이 많이 행해지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0년 서울지법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공무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얼굴도 보여준 방송사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판별하지 않고, 방송내용의 공익성 여부만을 판별했다. 범죄보도가 공익성을 띠는 경우는 그 내용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4)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가합88220 판결.

5)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6)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49001 판결.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피의자의 성명이나 신상 정보 등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sup>7)</sup> 이 사건에서는 비록 원고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법원은 밝혔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은 소위 “○양의 비디오”에 등장한 남자가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일부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sup>8)</sup>(보도내용의 진실성 부족으로 명예훼손도 일부 인정되었다). 언론사들은 “○양의 비디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도할만한 사건이고, 자신들의 보도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비디오에 대한 고발보도라며 공익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언론보도 내용에 공익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기사들을 읽는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의 대리만족,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궁금증 고조 등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고 보았다. 비록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을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원고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의 단행본 수기를

일부 게재한 잡지사에 대한 소송이 1991년 제기되었다. 피고 잡지사가 원고의 수기 중 성폭행 부분만을 발췌해 무단으로 게재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잡지사가 수기의 “일부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고,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 기사를 삽입하는 등으로 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것으로 오인케 하였고, 원고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sup>9)</sup> 이 사건에서는 기사내용의 공익성이나 원고의 공인 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불법 방북으로 유명해진 한 인사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여, 그와는 무관한 호화결혼식을 비판하는 뉴스에 사용한 방송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sup>10)</sup> 법원은 원고가 공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한 유명 영화배우의 여동생이 사실은 여동생이 아니라 딸이라는 암시를 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당사자의 승낙 없이 사진을 게재한 월간지에 대해 법원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규정하고 판결을 내렸다.<sup>11)</sup> 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정의하면서,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사생활의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고 강조하면서 원고들이

7)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2000가합4673 판결.

8)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9) 서울지방법원 1991. 1. 17. 선고 90가합15896 판결.

10)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11)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공익성과 더불어  
언론에게 주어진 또 다른 면책사유는  
본인의 승낙

“그 게재를 허락하지 않은 사진을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에 덧붙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인의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고가 영화배우로 활동한 당시는 공인의 신분이지만,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여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설사 공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눈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인이라도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 유명 여성연예인의 스캔들 기사를 다루면서 이미 오래전에 공표된 선정적 사진을 무단 게재한 잡지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sup>12)</sup> 법원은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아울러 초상권 침해도 인정했다.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진을 원고에 대한 추문 기사의 일부로 인식케 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강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유명인의 경우 비교적 초상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 2) 승낙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 공익성과 더불어 언론에게 주어진 또 다른 면책사유는 본인의 승낙이다. 언론사가 패소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피고의 동의를 얻

지 않고 무단으로 취재하거나 보도를 해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취재원과 약속한 대로 음성이나 화면을 변조하지 않았거나, 취재원에게 약속한 취지와는 다른 맥락에서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한 경우나,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언론사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다.

1993년에는 국내 대학생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외국잡지사에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다.<sup>13)</sup> 뉴스위크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대생 5명이 대학정문을 걸어 나가고 있는 사진 아래에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사진 속의 학생들은 사진촬영을 인지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었고 기사내용과도 아무 관련이 없었다. 법원은 “초상의 획득 및 공표가 공익적인 사항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공익성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잡지사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설사 범죄나 불법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수치스러운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소송들은 가장 전형적인 사생활 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1994년 한 방송사가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 문제를 보도하면서 취재원

12) 서울지방법원 1989. 7. 11. 선고 88가합3116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5. 4. 선고89나36528 판결.

13) 서울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4. 3. 30. 선고 93나31886 판결.

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원고의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자 취재원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sup>14)</sup> 법원은 언론이 취재원의 승낙을 받고 개인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보도했으나 그 승낙범위를 넘어 개인의 신분을 공개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설사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언론사가 피해자의 촬영을 사전에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면 사생활 침해로 인정되었다. 한 방송사가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는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한다고 학생들을 설득하여 취재한 후, 실제로는 신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에 화면을 사용해, 마치 그들이 퇴폐적인 신입생 환영회를 한 것처럼 오인케 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sup>15)</sup> 법원은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라고 판

결했다. 설사 방송프로그램이 공익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생활 비밀 및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유명인사의 결혼식 화면을 호화결혼식 비판 뉴스화면으로 사용한 방송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판결에서 법원은 촬영 당시 원고의 승낙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설사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결혼식 보도에 관한 사진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 데 대해 동의한 것일 뿐, 그 화면을 향후 방송사가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이 사용하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sup>16)</sup>

인신매매에 관한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한 방송사가 서울역 부근 일용노동자들에게 인신매매범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며 인터뷰 촬영을 요구했고, 그들은 얼굴과 목소리 등을 조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응했다. 그러나 정작 방송에서는 음성변조도 하지 않았고 얼굴 일부분을 방영하여,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방송사가 원고들의 신원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범인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방영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배상을 명령했다.<sup>17)</sup>

한 월간지는 서울 일부 지역의 향락문화를 비판 보도하면서, 기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게재해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sup>18)</sup> 법

14)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

18)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언론중재제도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해

원은 잡지사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사진을 찍고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라고 판결했다. 잡지기사의 공익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여성잡지가 연하의 남자와 사귀는 여성들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기사와 무관한 여성들의 사진을 마치 인터뷰에 응한 여자들의 사진인 것처럼 편집해서 초상권 침해 판결을 받기도 했다.<sup>19)</sup> 법원은 문제의 기사가 미혼인 원고들의 인격 및 행실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방송사가 펜션분양 사기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보도된 회사가 사기분양을 했는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원고의 회사가 사기업체인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700만 원, 동의 없

이 회사대표의 얼굴을 공표하고 음성을 변조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인정,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sup>20)</sup>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초상권 침해로 제기된 소송이나 초상권 침해로 간주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는 17건 중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는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경시해서라기보다는 언론사의 무모한 보도관행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가 패소한 판결의 상당수가 언론의 명백한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여러 법적 개념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고,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위법성 조각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3. 언론중재제도와 초상권 침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언론중재제도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2. 27. 선고 97가합15881 판결.

20) 서울중앙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판결

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초상권 침해도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인격권으로 포함시켰다.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따라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발효된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2년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초상권 침해 사건은 165건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처리한 전체 조정 및 중재 청구건수 2,245건의 7.3%에 해당했다. 초상권 침해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0.3%로 전체평균 61.0%보다 1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성원, 2007).

2005년 7월부터 2년간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초상권 침해사례 165건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촬영, 게재해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언론사에서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였다. 법적 소송과 다른 점은 피해를 주장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적인물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는 점이다. 16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보도내용과 관련 있는 일반인의 초상이나 업체의 상호를 동의 없이 촬영·게재한 경우가 55건, 보도내용과 무관한 일반인의 초상이나 업체의 상호를 동의 없이 촬영·게재한 경우가 37건이었다. 촬영 당시 동의 범위를 넘어 초상을 게재한 경우가 21건이었고, 타 매체나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무단 사용한 경우가 10건이었다. 범죄보도와 관련한 초상권 침해사례도 42건이었는데 이중 33건은 범죄피해자 혹은 제보자의 초상권 침해 사례였고, 범죄가해자 혹은 피의자, 피고인의 초상권 침해는 9건이었다(장성원, 2007).

초상권 침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같은 구제수단이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손

해배상이 주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사례를 보면, 청구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 배상액은 이보다 크게 낮아, 최저 49만 원에서 최고 700만 원에 달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41건의 초상권 침해 배상에 대한 액수별 분포를 보면, 100만 원 미만의 손해배상 사건은 13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건이 13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10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건이 5건에 해당했다(김동하, 2007).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는 언론중재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한 조사관에 따르면 손해배상 위자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고, “법원과 비슷한 고려 요소를 가지고 손해배상 합의 권고액 내지 결정액을 정하고 있다”(장성원, 2007). 법원 역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액수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언론중재제도 역시 손해배상에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결정문을 통해 나타난 손해액 산정방법을 보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재결정문에 나타난 배상액 산정기준을 보면 단순히 여러 요인들을 나열할 뿐 각각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경위, 2001년도 방송분을 재방송한 점, 신청인의 나이, 직업, 방송된 신청인 초상과 현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그 특정의 정도

초상권 침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같은  
구제수단이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손해배상이 주된 구제 수단되고 있어

및 신청인 초상의 노출시간, 인터넷 다시보기 방송중단 조치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2007서울중재1).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행사의 취지 및 행사의 성격, 촬영 경위, 신청인에게 법의 침해의 고의성 정도, 신문의 배포부수, 신청인의 나이, 직업, 초상의 특정 정도 및 행사주체업체가 신청인에게 미리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2007서울중재3).

손해배상의 모호한 기준은 피해를 청구하는 측이나 언론사 측 모두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김동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비록 법원의 것에 비교하지 않더라도 너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위자료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위로하거나 비난받을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김동하, 2007).

그러나 비록 피해자에게는 적은 액수의 보상금이라 할지라도 언론사에게는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목적도 있지만, 언론에게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언론중재법 제3조는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정, 반론 혹은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정도가 지나칠 경우 언론자유에 부당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4.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

언론중재제도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언론매체의 보급률이나 피해자의 특성 등 일반적 고려요인 외에, 초상권 침해의 고의성, 보도내용의 공익성, 피해자의 참여도, 피해의 정도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진실성 다툼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규모를 판단할 때 비교적 언론중재위원회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침해의 고의성 여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발생한 고의적 초상권 침해와 과실로 인한 초상권 침해는 구별해서, 과실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를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촬영 후 공표하였거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조작한 경우 등은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수의 증액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형부작용에 관한 9시 TV뉴스에서 한자로 가장하여 몰래 촬영 후 “기자의 구미에 맞는 내용만을 골라 보도” (손해배상 1억 청구, 구두사과 후 취하. 2007서울조정306)

마리톤과 같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일간지 기사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컴퓨터 조작하고 동의 없이 사용(손해배상 500만 원 청구, 100만 원 배상조정. 2007서울조정215)

반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줄 오인하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론사들이 결혼정보업체의 보도협조 요청을 받아 취재 후 촬영하여 게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직접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2개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 각 230만 원씩 합 460만 원 청구, 각 100만 원씩 합 200만 원 중재결정. 2007서울중재3, 2007서울중재4)

일간지가 임신부 관련 사진을 게재했지만, 당사자로부터 직접 확인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로부터만 승낙을 받은 경우(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150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316)

## 2) 보도내용의 공익성 여부

지금까지 언론중재위가 다룬 초상권 침해 사례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 보도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성이 강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오락적, 상업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가급적 줄이고, 공익성이 낮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일간지에 게재된 용역업체 직원의 철거민 부녀자 폭행 사진에서 폭행을 방관하는 듯 보이는 사람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 피해자는 “누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진을 게재하는데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손해배상 1,000만 원 청구, 100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348)

비록 해당 사진은 언론사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사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공권력의 방관 등에 대한 고발성 기사로서 공익성이 높으므로 손해배상 산정에서 감액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선방송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를 들고 의류상점에 들어가 커피를 쏟은 후 상점주인의 반응을 동의 없이 촬영 후 방송(손해배상 250만 원 청구, 115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16)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오락적인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고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산정에서 증액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피해자의 책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보도내용에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상권 피해자가 언론보도를 자

침해의 고의성 및 보도 내용의 공익성 여부,  
피해자의 책임, 촬영거부의 정도, 피해의 입증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초할만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나 언론이 보도한 행위의 적극적 참여자라면 손해배상의 한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보험영업을 하는 운전자가 주차단속중의 주차단속원을 폭행한 사건의 현장 사진을 입수해 전송한 통신사(2개의 통신사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 청구, 각각 700만 원과 200만 원 조정결정. 2007서울조정70)

비록 피해자는 신용과 명예의 훼손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가 책임져야할 불법행위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초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배상액수는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대학가 축제현장에서 “편치왕” 이벤트에 참가한 여성의 사진을 배포한 통신사와 이를 게재한 두 개의 무료일간지(3개 언론사에 총 7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총 200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171)

대학축제처럼 일반에게 공개되고 통상 사진촬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서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므로 배상액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4) 촬영거부의 정도

언론의 사진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촬영을 거부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진촬영이 예상되거나 이루어지는 현

장에서 단순히 자신을 “찍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당사자가 적극적인 촬영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수 산정에서 감액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도중 사진기를 들고 있는 사진기자가 기계 앞에서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자가 연합뉴스 사진기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찍힌 사진이 신문에 날 것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만약 찍힌 사진이 신문에 실릴 거라고 제게 말했더라면, 사진을 찍는 것을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찍힌 사진을 기사에 이용할 것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주장(3개 언론사에 총 7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총 200만 원 조정. 2007서울조정171)

취재진에 둘러싸여 고통스러워하는 유명 영화배우 옆에서 취재도중 사진에 찍힌 사진기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 “취재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모습을 찍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2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조정불성립. 2007서울조정198)

위의 사건에서처럼 공개적으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촬영하는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보다는 사진촬영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5) 피해의 입증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의 입증도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적어도 본인이 느끼는 수치심 외에 구체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수긍할만한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날씨를 보도하면서 추운 겨울 몸을 웅크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통신문사가 촬영하여 게재한 사례. 신청자는 수치심으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주장(100만 원 손해배상청구, 30만 원 중재결정. 2007서울중재6)

위 사건에서 피해청구자의 주장처럼 추운 겨울 몸을 웅크린 사진의 공개가 죽고 싶거나 미칠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5. 맺음말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무책임한 인격권 침해로 인해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공적 기능을 감안해 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의 요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판결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인격권 침해에 제동을 걸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가 다른 초상권 침해 사건 역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적 소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구제 신청자가 공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

라 모두 일반인들이었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 결정의 경우,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영역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엿보인다. 개인의 초상권에 대한 고의적 침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언론의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할 필요가 있다. 초상권 보호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킨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 모두가 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의 손질도 필요하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신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개인의 초상을 왜곡되게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인상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주는 경우에만 중재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오보는 아니고 단지 수치스럽거나 공개하고 싶지 않은 초상을 공개한 언론보도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 주장도 아니고 오보도 아니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는 인격권 피해자 개념을 넓게 잡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 신청자격을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장성원, 2007).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 등 언론보도에 대한 모든 불만이 언론중재위원회로 청구될 수도 있어, 언론중재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현행과 같이 오보에 대한 정정과 반론으로 국한시키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만은 예외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명식(2003). 언론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와 사법적인 보호법리. 『언론과 정보』, 제9호, pp. 97-137.
- 김경호(2003).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형.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pp. 246-273.
- 김경호(2004).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권 2호, pp. 88-120.
- 김동하(2007).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 27권 3호, pp. 5-38.
- 김옥조(2005).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 손원선(1998). 초상권 침해에 대한 등의 한계. 『언론중재』, 18권 4호, pp. 71-81.
- 엄동섭(1998).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8권 2호, pp. 24-37.
- 이승선(2006). 초상의 상업적 이용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8권 1호, pp. 219-247.
- 임건면(2001).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18권 1호, pp. 213-237.
- 장성원(2007). 초상권 등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7권 3호, pp. 114-139.
- 한위수(1999).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권 2호, pp. 47-61.